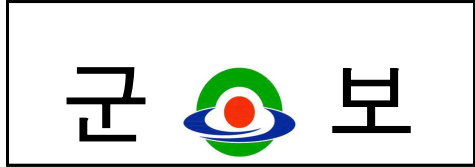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81호 2024. 12.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48호)
-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49호)
- 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50호)
- 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51호)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52호)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53호)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54호)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63호)

공 고

- 예천 군계획시설(대로3-9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4-163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8호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예천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대원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약취·유인·가출·사고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수색활동 지원(안 제5조)

- 실종자 수색대원에게 식사 및 간식 등 제공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49호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중소기업 입지개선 및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예천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안 제3조)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 등

나.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안 제4조)

-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입주부담금(안 제5조 ~ 제6조)

-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
- 입주부담금 :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

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7조)

-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

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 지원(안 제8조)

-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등

바.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0조)

-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소속공무원은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50호

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맨발걷기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확충,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6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51호

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

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제2장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

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분 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신청자 중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16조(처분제한)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따른다.

제17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복지시설·환경위생시설·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했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이유

-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천군 농공단지의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조성사업, 조성지, 분양지 용어 정의

나.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

다. 분양 대상 용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로 함

라.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함

마. 분양절차 및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분양신청서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양계약 시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 현금 납부

바.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사.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 용도로 미 사용시 용지 환수
- 환수 조치 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52호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2.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4.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구성은 예천군청 행정문화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행복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교육기관의 교직원(교장, 교사 등)
3.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협의회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관내 기관·민간단체 등과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예천군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안 제2조)

-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나. 협의회 구성·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회의 개최 : 정기회 - 연 2회(반기별 1회), 임시회 - 필요시
- 관계기관 협조,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53호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예천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귀촌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중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변경 : 예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예천군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고, 예천군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농·귀촌 지원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예천군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활동
-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다. 귀농인 관련 지원 사업 정비(안 제7조)

-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54호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를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사과테마파크’”를 “이하 “사과테마파크””로, “일월에 둔

다”를 “일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을 “테크사이트, 파쇄석사이트 및”으로 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중 “군민”을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리·운영하게”를 “관리 및 운영하게”로, “단체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운영·요금”을 “관리 및 운영,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단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이용료를”을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4.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
 15.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캠핑장 시설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시행령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이용료(제3조, 제8조, 제11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이용기준	주말·공휴일	평 일	비 고
테크·파쇄석 사이트	1개소/1일	40,000	30,000	※ 화장실, 식수대 등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1사이트당 텐트 1동, 인원 5인, 차량 1대 기준

*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 평 일 : 일요일~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시설이용료 추가)

* 시설이용료 감면

- 5,000원 감면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 전액 감면 :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개 시설에만 감면 적용

◇개정이유

- 공공시설인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 및 예우(禮遇)를 하고자 함.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 정비(안 제11조)

-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 시설이용료 5,000원 감면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설이용료의 반환 사유 및 범위 정비(안 제12조)

○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취소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및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일부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1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20% 공제, 당일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시 30% 공제 후 반환

예천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예천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360	대심리 744-9	지내리 136-1	일반 도로	-	경고제269호 (1992.09.02.)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65	대심리 754-13	지내리 136-1	일반 도로	-	경고제269호 (1992.09.02.)	
폐지	소로	2	56	8	국지 도로	98	청복리 385-8	소로1-20	일반 도로	-	경고제269호 (1992.09.02.)	
폐지	소로	3	61	6	국지 도로	30	어린이 공원5	소로3-60	일반 도로	-	경고제98호 (1978.04.08.)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110	대심리 494	대심리 465-1	일반 도로	-	경고제98호 (1978.04.08.)	
변경	소로	3	71	6	국지 도로	50	대심리 500-13	대심리 465-1	일반 도로	-	경고제98호 (1978.04.08.)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0호선	소로1-10호선	노선 단축 B = 10m L = 360m → 265m (감:95m)	미집행 부분의 실효에 따른 노선 단축
소로2-56호선	-	노선 폐지 B = 8m, L = 98m	미집행에 따른 실효
소로3-61호선	-	노선 폐지 B = 6m, L = 30m	미집행에 따른 실효
소로3-71호선	소로3-71호선	노선 단축 B = 6m L = 110m → 50m (감:60m)	미집행 부분의 실효에 따른 노선 단축

2. 실효일자 : 202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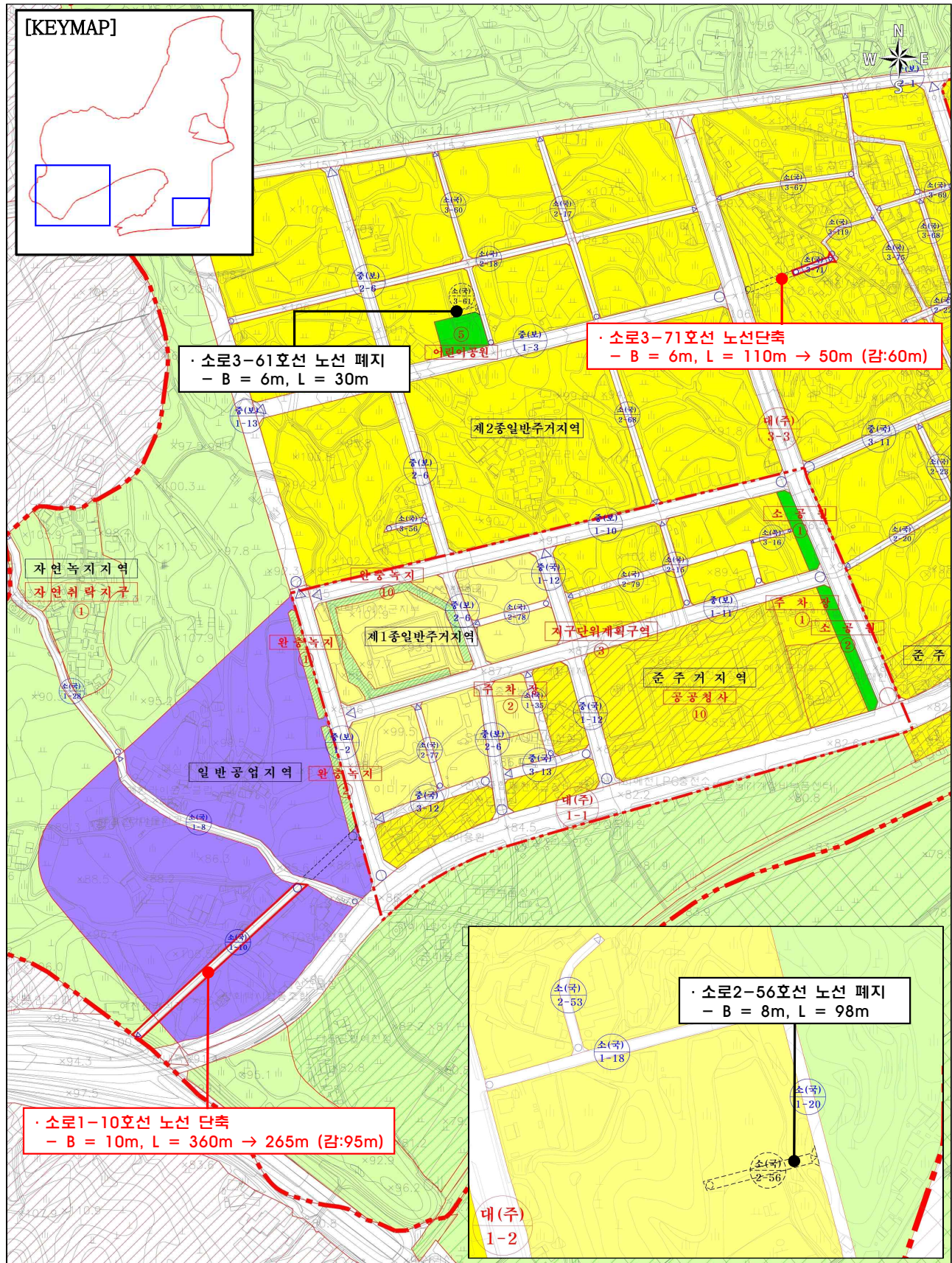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아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예천 군계획시설(대로3-9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예천군 고시 제2024-137호(2024.11.7.)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표자 이재혁으로부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열람공고합니다.
- 관계 서류는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예 천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대로3-9호선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A=1,977㎡

- 대로3-9(L=68m, B=28m) : 도로(교량) 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대로	3	9	28	집산 도로	68	광로2-1(예)	대로3-8	일반 도로	-	예천군고시 제2024-137호 (2024.11.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표자 이재혁
- 주소 : 경북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주 소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세	
총계	5필지		52,726.9	1,977						
1	호명읍 금능리 798	공	8,864.3	330.0	예천군					
2	호명읍 금능리 799	제	3,217.4	112.0	경상북도					
3	호명읍 금능리 800	천	24,061.2	841.0	경상북도					
4	호명읍 금능리 801	제	3,193.3	112.0	경상북도					
5	호명읍 금능리 802	유	13,390.7	582.0	예천군					

사. 열람기간 : 2024. 12. 12. ~ 2024. 12. 26. (14일간)

아.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예천읍 충효로 111, 4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